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7급 1명)을 증원하고,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(6급 3명, 7급 2명)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(6급 1명, 7급 1명)을 증원하며,

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4. ~ 3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11호 “세무대리인의 관리·감독”을 “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2제2항제4호 “세무대리인의 관리·감독”을 “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, 전산처리 등 대면업무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905”를 “90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901”을 “90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888”을 “890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20,202”를 “20,20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0,202”를 “20,209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0,178”을 “20,18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개인납세국) ① (생 략)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1. <u>세무대리인의 관리·감독</u>	제12조(개인납세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. 11. <u>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</u>
제26조의2(성실납세지원국) ① (생 략)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4. <u>세무대리인의 관리·감독</u>	제26조의2(성실납세지원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. 4. <u>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건 조사, 전산처리 등 대면업무에 관한 사항</u>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국세청 공무원 정원표(제3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905</u>	<u>907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901</u>	<u>903</u>	+2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888</u>	<u>890</u>	+2
·	·	·	

[별표 3]

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0,202</u>	<u>20,209</u>	+7
일반직 계	<u>20,202</u>	<u>20,209</u>	+7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0,178</u>	<u>20,185</u>	+7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6